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Q & A 자료집

2022. 4.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 목 차 ||

1. 등록기준 - 시설·설비 기준

가. 교사(校舍) 및 교지

- 1) 대안교육기관이 분교(제주도 등)를 운영할 시 분교의 등록은? 1
- 2) 현재 교사동을 공사중에 있으며 8월경에 준공예정임. 이 경우, 조건부 등록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1
- 3) 학생정원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인데 60명이 초과되면 교사수, 행정인력, 급식인력 등에서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1
- 4)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교사실로 사용할 경우 부적격 사유인지? 2
- 5)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있는지? 2
- 6) 외국국적의 학생도 대안교육기관 교육대상 학생으로 등록가능한가? 2
- 7) 교사의 면적기준(시행령 별표1)에 해당면적(옥상, 운동장, 지하1층 체육관)이 포함되는지? 3
- 8) 유초중고를 운영중임, 경기도 내에 위치해 있으나 각각의 건물위치가 다른데 교지를 공동으로 합산하여 사용 가능한가? 3
- 9) 가설건축물이 불가함은 소방 등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인데 가설건축물이지만 소방안전법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확인 후 등록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는가? 4
- 10)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방법은? 4
- 11) 초등, 중등과 같이 쓰는 교사(校舍)의 경우 면적을 어떻게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가? 4
- 12)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계약 만료일자가 2022.5월인데 연장하여 계속 건물을 사용할 예정임. 그런 경우 따로 연장 계약서가 없어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전 임대 계약서를 그냥 제출해도 되는가? 5

나. 교수·학습 및 교구

- 13) 현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수업하고 있으며, 일부 과목을 외국 교재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5
- 14) 대안학교별 자율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는가? 6
- 15) 교수-학습 요건의 적합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그냥 서술식으로만 기술하면 되는가? 6
- 16) 교과과정을 초·6년, 중·3년, 고·3년이 아닌 다른 기준의 과정으로 등록 가능한가? 7

다. 등록불가시설

- 1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중,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 등' 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말하는 것인가? 7

2. 등록기준-인적 기준

가. 설립·운영자

- 18) 설립·운영자가 단체일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8
- 19) 법인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인 경우 법률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인가? 8
- 20)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주체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교회설립학교는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표자 명의인 개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8
- 21) 대안교육기관 등록 주체의 경우 단체로 비영리 임의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았을 경우 등록단체로 인정되는가? 9
- 22)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 9
- 23) 대안학교 등록 이후에는 법인과 같거나 혹은 동등한 권한을 받아 업무처리가 가능한가? 9

나. 교원

- 24) 교직원은 상근직원, 교원은 강사, 봉사자로 구성 가능한가? 10
- 25) 교원의 자격 기준 중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0
- 26) 등록된 학교의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인가? 또는 교육공무원 근로기준 적용인가? 10
- 27) 설립·운영자 및 교원의 결격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폭력, 마약 등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
- 28) 특별활동지도 강사 등과 같은 외부강사도 교직원 명단에 다 올려야 하는가? 11
- 29) 등록서류 중 교직원증빙서류는 어떤 것인가? 11

3. 등록시 제출 서류

- 30) 기관 등록은 필수인가? 기관 등록이 되었을 때 학력 인정이 가능한가? 12
- 31) 청소년 시설로 공제회 가입하는 것과 등록대안학교 이후 공제회 가입하는 것이 다른가? 12
- 32) 등록 서류 중 ‘학생 명부 제출 시 학생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은 무슨 의미인가? 12
- 33) 공제회 보험 가입 없어도 기관 등록 신청 가능한가? 13
- 34)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내년 2월말까지 가입되어 있는데, 올해 등록 시 제출 가능한가? 13
- 35) 학칙(별지 제1-2호)의 정의는? 13
- 36) 경비와 유지방법(별지 제1-3호)_ ‘연간 예산서’ 작성기준은? 14
- 37) 경비와 유지방법(별지 제1-3호)_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액’ 작성기준은? 14
- 38) 숙박을 하는 여행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1-4호)의 수업시수에 몇시간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14

- 39) 교직원 배치계획서(별지 제1-5호) 작성방법은? 15
- 40)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식적인 명칭(별지 제5호)은? 15
- 41) 제출 서류 중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제출하는가? 15
- 4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대안교육기관 대표자의 이름이 같아야 하는가? 16

4. 등록절차

- 43) 5월 등록 일정 외에 올해 하반기 등록 예정 일정은? 16
- 44) 신청은 했으나 등록 불가이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
- 45) 팩스나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고 각 기관들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가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17
- 46) 등록서류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는가? 17

5. 등록 이후 운영 관련

- 47)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결산 자료는 즉시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의 범위는? 18
- 48) 미인가대안교육기관이라면 지원만 안해주는 것이 맞지, 학력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8
- 49) 현재 대안교육기관들은 학부모들의 출자금으로 교사(校舍)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탈퇴 가정이 생겼을 때 바로 반납을 해줘야 할 경우 대안학교의 존립이 어렵다. 이것에 대하여 학교 자체 규정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은? 19
- 50) 공교육과 같이 안전공제회 가입 또는 정기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보조 사업 또는 교육청 주도로 받을 수 있는가? 19
- 51) 놀이시설 등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기준은? 19
- 52) 소방서 사전 점검을 요청했더니 교육청의 협조요청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경기소방에 협조공문으로 지역소방서에 협조가능하도록 처리 가능한가? ... 19

- 53) 교회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건물의 재산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가? 20
- 54) 신규 설립하는 기관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20
- 55)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0

6. 기타

- 56) 대안교육기관 뒤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21
- 57) 작년에 대안교육기관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 해야 하는가? 21
- 58) 편입이나 기타 이유로 학생수 변동 시 변경등록을 매번 해야 하는가? 21
- 59) 교직원배치계획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변경등록 절차없이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한가? 22



1. 등록기준-시설, 설비 기준

가. 교사(校舍) 및 교지



1 ○ 대안교육기관이 분교(제주도 등)를 운영할 시 분교의 등록은?

- 경기도교육청에 등록하려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타 시도에 소재하는 관련 시설(분교 등)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2 ○ 현재 교사동을 공사중에 있으며, 8월경에 준공예정임.
이 경우 조건부 등록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건부 등록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3 ○ 학생정원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인데 60명이 초과되면 교사수, 행정인력, 급식인력 등에서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 학생수를 학교급에 따라 구분해 놓은 이유는 시행령에 따라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 외에 급식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각각의 개별법의 적용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Q A 4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교사실로 사용할 경우 부적격 사유인지?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교지·숙박시설 내 가설건축물이 있을 시 등록 불가하며 예외적인 경우(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교사실의 경우는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판단되므로 가설건축물을 교사실로 사용할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기준

Q A 5 ○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있는지?

-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소방관련법·건축법 등 관련법에 위반될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기준

Q A 6 ○ 외국국적의 학생도 대안교육기관 교육대상 학생으로 등록가능한가?

- 학령기 아동(만 6세~만18세)에게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교육대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Q A 7

○ 교사(校舍)의 면적기준(시행령 별표1)에 해당면적(옥상, 운동장, 지하1층 체육관)이 포함되는지?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나온 연면적인가?)

- 건물의 한층 전체를 보유하거나 임대할 경우 교사 면적기준은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으로, 일부 호실을 보유하거나 임대할 경우 실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으로 판단 예정입니다.
- 따라서, 옥상과 운동장은 면적기준에서 제외되고 지하 1층 체육관 및 강당은 교사의 면적기준에 포함합니다.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기준

Q A 8

○ 유초·중고를 운영중에 있음. 모두 경기도 내에 위치해 있으나 각각의 건물 위치가 다름.
- 교지를 공동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면 되는가?
- 임대차계약 없이 해당 장소를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무상사용허가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되는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학교 과정 급별로 학생수(총학생정원)별 면적을 산정하여 기준면적에 충족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합니다.
-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사용기간이 명시된 ‘사용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무상사용허가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기준

Q 9 ○ 가설건축물이 불가함은 소방 등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인데 가설건축물이지만 소방안전법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 후 등록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는가?

-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교지·숙박시설 내 가설건축물이 있을 시 등록 불가하며 예외적인 경우(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기준

Q 10 ○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방법은?

-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작동기능점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혹은 **소방서의 소방점검**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기준

Q 11 ○ 초등, 중등과 같이 쓰는 교사(校舍)의 경우 면적을 어떻게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가?

- 같은 면적이 중복하여 산출되면 안되므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해야 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 통합 운영일 경우 학교급별 기준면적합산 적용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기준

Q A 12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계약 만료일자가 2022.5월인데 연장하여 계속 건물을 사용할 예정임. 그런 경우 따로 연장 계약서가 없어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전 임대 계약서를 그냥 제출해도 되는가?

-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간의 계약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1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나. 교수·학습 및 교구

Q A 13

○ 현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수업하고 있으며, 일부 과목을 외국 교재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1호 및 2호에 따르면, 외국 대학 입학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과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에 해당된다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설립운영 목적, 교육목표, 학칙,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1호 및 2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기준



Q A 14 ○ 대안학교별 자율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는가?

-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중 <별지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연간 학사 일정, 교육과정 편성표, 과목 개요 등을 기관의 특성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내용 적합성에 대한 심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다만, ①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②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③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등 ④그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 등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기준

Q A 15 ○ 교수-학습 요건의 적합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그냥 서술식으로만 기술하면 되는가?

-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중 <별지 1-8 시설·설비 현황> 양식에 교수학습 요건(방음·환기·채광·배수·위생, 교구)의 적합 근거 및 사유 등을 서술하여 제출합니다.
- 안전기준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서류, 소방기준은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서류

Q A 16

○ 교과과정을 초-6년, 중-3년, 고-3년이 아닌 다른 기준의 과정으로 등록 가능한가? (예를 들어 초1~중2 운영, 중3~고3 운영, 8년+4년 운영하는 경우)

- 대안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제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 교사(校舍)의 면적기준에 나온 학교급(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은 초·중·고등학교법상의 학교별 수업연한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다. 등록불가시설

Q A 17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중,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외국대학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말하는 것인가?

-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 후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등록위원회는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등을 등록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 단체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조

2. 등록기준-인적 기준

가. 설립운영자

Q A 18 ○ 설립·운영자가 단체일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 비영리단체 지원법, 소득세법 등 타법에서 인정하는 단체 모두 지원 가능하며, 해당 단체의 **단체 증명서류**, **회칙**(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 정족수 확인을 위해 필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결정하는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서류

Q A 19 ○ 법인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인 경우 법률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인가? (1) 법인인지 (2) 이사장만인지 (3)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모두가 대상인지?

- 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결격사유 확인 대상은 법인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입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서류

Q A 20 ○ 대안교육기관 등록 주체(개인·법인·단체)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교회설립학교는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명의인 개인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 교회설립학교 중, 법인은 종교법인으로 되는데 종교법인도 된다는 말인가?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주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로서 개인, 법인, 단체 모두 가능하므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서류

Q A 21

○ 대안교육기관 등록 주체의 경우 단체로 비영리 임의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았을 경우 등록단체로 인정되는가?

- 설립, 운영은 비영리단체 지원법, 소득세법 등 타법에서 인정하는 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등록서류

Q A 22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일괄 탑재 예정입니다.

Q A 23

○ 현재 단체(조합)와 법인 두 가지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중인데 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는 업무처리에 제한이 없지만, 단체(조합)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으로 업무 처리에는 제한이 많은데, 대안학교 등록 이후에는 법인과 같거나 혹은 동등한 권한을 받아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가?

- 설립 유형별(법인, 단체, 개인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원

Q A 24 ○ 교직원은 상근직원, 교원은 강사, 봉사자로 구성 가능한가?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의 자격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기관의 교직원의 임용과 구성은 결격사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제출 서류 중 <별지 1-5> 교직원 배치계획서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Q A 25 ○ 교원의 자격 기준 중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①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①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Q A 26 ○ 등록된 학교의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인가? 또는 교육공무원 근로 기준 적용인가?

- 교육공무원이란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소속되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평가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은 설립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12조

Q A 27

○ 설립·운영자 및 교원의 결격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폭력, 마약 등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조회 예정입니다.
- 기관별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진 설립·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Q A 28

○ 특별활동지도 강사 등과 같은 외부강사도 교직원 명단에 다 올려야 하는가?

- 다년간 정기적으로 수업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 직원으로 봐야 하는가?

- <별지 1-5 교직원 배치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는 ‘교원’은 각 기관에 소속되어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사람으로 교장, 교감, 교사를 말하고, ‘교직원’은 교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학교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무직원 또는 학교장의 지휘를 받아 학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각종 장부의 기록의 작성 관리, 학교 시설의 유지와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외부강사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29

○ 등록 서류 중 교직원증빙서류는 어떤 것인가?

- <별지 1-5> 교직원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교원자격증, 졸업증 등 각종 증빙 서류는 기관 자체 확인 및 보관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3. 등록시 제출 서류

Q A 30

○ 기관 등록은 필수인가?

기관 등록이 되었을 때 학력 인정이 가능한가?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경기도 소재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 참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므로 학력인정은 불가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초·중등 교육법」 제4조

Q A 31

○ 청소년 시설로 공제회 가입하는 것과 등록대안학교 이후 공제회 가입하는 것이 다른가?

-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단,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발급 이후 14일 이내 제출하면 되므로 학생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임을 감안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실정에 맞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기준

Q A 32

○ 등록 서류 중 ‘학생 명부 제출 시 학생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은 무슨 의미인가?

- 학생명부는 학생 모집이 완료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각 기관별 학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명부의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학부모의 개인정보 동의 수락 시간을 부여하여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33 ○ 공제회 보험 가입 없어도 기관 등록 신청 가능한가?

-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34 ○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내년 2월말까지 가입되어 있는데, 올해 등록 시 제출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 단, 가입 내용이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35 ○ 학칙(별지 제1-2호)의 정의는?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서류 중 학칙은 ‘학칙(별지 제1-2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규정’으로 형태가 아닌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36

○ 경비와 유지방법(별지 제1-3호)_ ‘연간 예산서’ 작성기준은?

- 지자체 지원액, 교육청 지원액, 학부모회비 작성 여부

- 경비와 유지방법의 ‘연간 예산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지출과 수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지원액(급식비 등), 교육청 지원액(보조금 사업 등), 학부모회비(공식적인 조직) 등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모두 작성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37

○ 경비와 유지방법(별지 제1-3호)_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액’ 작성기준은?

-방과후 활동, 여행비용, 입학금, 발전기금, 기부금, 임대료 등 작성 여부

- 경비와 유지방법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액’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생의 부담액 모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비용(방과 후 활동 등), 여행비용(교육과정에 포함된 여행일 경우만 해당), 입학금, 발전기금, 기부금, 임대료 등 **학생의 부담액 모두 작성대상에 포함**됩니다.

※ 할인이나 감면규정은 별도로 제출가능

※ 해당 항목이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38

○ 숙박을 하는 여행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1-4호)의 수업시수에 몇시간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 교육과정에 포함된 여행일 경우 수업시수 작성이 가능하며, 수업시수는 여행의 목적·여행 중의 교육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39

○ 교직원 배치계획서(별지 제1-5호) 작성방법은?

- 법인의 직원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우

-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대안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모두가 작성대상이며, 교원(현황)의 경우 학교급은 대안교육기관의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선택, 담당과목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의 과목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서류

Q A

40

○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식적인 명칭(별지 제5호)은?

- 외부표기 명칭 등

- 대안교육기관 등록증(별지 제5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식적인 명칭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____ (학교)*’으로 표기됨이 원칙이며, 대안교육기관 외부에 표기되는 명칭 또한 동일합니다.

* 학교명칭 사용은 의무는 아님

【관련 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등록 시 제출 서류

Q A

41

○ 제출 서류 중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제출하는가? (예. 학칙, 수업료, 교원자격 심의 등)

- 재정운영계획서, 교육과정계획서, 교직원배치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계획서’이므로 등록 시 운영 계획에 따라 제출하고, 등록 후 교육 운영이 시작된 후 1개월 이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사항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Q
A

4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대안교육기관 대표자의 이름이 같아야 하는가?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법인, 단체)가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校舍)를 확보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하므로 설립, 운영하려는 자 이름으로 계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

4. 등록절차

Q
A

43

○ 5월 등록 일정 외에 올해 하반기 등록 예정 일정은?

- 5월 9일부터 5월 20일에 진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 상황과 결과 검토 후 하반기 등록제 접수 계획 여부를 수립 및 결정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Q
A

44

○ 신청은 했으나 등록 불가이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시설·설비기준 등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거치고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기관은 추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 등록 접수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

Q A 45

팩스나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고 각 기관들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가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서류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방문 접수를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임자가 접수 시에는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 첨부이 필수입니다.
-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사전 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에 등록 공고」

Q A 46

○ 등록서류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는가?

- 각 기관에서 등록서류 제출 후 서류심사와 시설·설비기준 등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



5. 등록 이후 운영 관련

Q 47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결산 자료는 즉시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의 범위는? 또한 복식부기로 기록된 회계기록이어야 하는 것인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운용)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개된 내용은 누구나 열람 가능해야 하며 복식부기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Q 48 ○ 미인가대안교육기관이라면 지원만 안해주는 것이 맞지, 학력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동 법률에는 학력인정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 현행법상 학력인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의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제27조의2(학력인정시험)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7조의2

Q 49 ○ 현재 대안교육기관들은 학부모들의 출자금으로 교사(校舍)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탈퇴 가정이 생겼을 때 바로 반납을 해줘야 할 경우 대안학교의 존립이 어렵다. 이것에 대하여 학교 자체 규정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업료 등)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수업료 등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반환 규정은 각 기관별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Q A 50

○ 공교육과 같이 안전공제회 가입 또는 정기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보조 사업 또는 교육청 주도로 받을 수 있나요?

-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불가하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Q A 51

○ 놀이시설 등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기준은?

- 놀이시설 관련하여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 위법 놀이기구 및 시설을 인지하였음에도 보유하거나 사용했다면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

Q A 52

○ 소방서 사전 점검을 요청했더니 교육청의 협조요청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경기소방에 협조공문으로 지역소방서에 협조가능하도록 처리 가능한가?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22.2.18.)에 따라 소방기준 점검 서류로 소방관련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소방서로 직접 점검 신청을 통해 확인받은 결과를 제출해 주시거나 민간 방재 업체를 통해 받은 결과를 첨부해 주시면 소방관련법 확인 사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Q A

53

○ 교회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건물의 재산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가?

- 관련내용은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해당 개별법의 적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Q A

54

○ 신규 설립하는 기관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등록 후 교육 운영이 시작된 후 1개월 이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권장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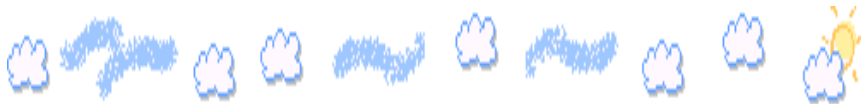
Q A

55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하여 2년의 임기를 권장합니다.

【관련 규정】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6. 기타

Q A

56

○ 대안교육기관 뒤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식적인 명칭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_____(학교)*’ 으로 표기됨이 원칙이며, 대안교육기관 외부에 표기되는 명칭 또한 동일합니다.

* 학교명칭 사용은 의무는 아님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Q A

57

○ 작년에 대안교육기관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가?

-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내용입니다.

※ 2021년 경기도청 청소년과: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제 실시

Q A

58

○ 편입이나 기타 이유로 학생수 변동 시 변경등록을 매번 해야 하는가?

- 학생의 편입 등에 따라 ‘학생명부’가 변동 되는 경우는 변경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협의회(22. 4. 12.)

○ 교직원배치계획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변경등록 절차없이

Q A

59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시모집 등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을 변경등록 절차 없이 변경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2022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Q & A

0000 0000 + 0